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0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3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3. 0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의원)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및 제10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u>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¹⁾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조 및 제10조²⁾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직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술인이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2021년부터 마포와 대학로에 각각 운영하고 있음.

-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최근 3년간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 현황]

연도	예산 (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
2021	506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총 이용횟수 3,340건 ▲이용인원 150명
2022	58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총 이용횟수 5,422건 ▲이용인원 178명
2023	58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총 이용횟수 4,319건 ▲이용인원 242명
2024	58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자녀돌봄 시설 2개소(마포, 대학로)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예술인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10조에 규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예술인은 그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평일 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술인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의 이용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³⁾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행법 제4조제4항⁴⁾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4조제5항과 같이 개별 사업의 재원 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사업 수행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경력 단절 위기의 예술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3)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1,564명) 중 9%가 ‘출산/육아’가 예술경력 단절 사유라고 응답하였음.

4)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u>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